

<p>제2020-181호 2020년 9월 23일(수)</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청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0-382호 여수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공고 3
- 여수시 고시 제2020-385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5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2356호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재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0-2357호 행정처분사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0
- 여수시 공고 제2020-2364호 선원 반월·화양 옥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11

기 타

회 람								
--------	--	--	--	--	--	--	--	--

여수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6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 등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낚시인이 여수시 관내 해역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4조(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 명령)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여수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3. 안전관리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 등 지시
- ② 낚시인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인의 준수사항) 낚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채장·체중
3.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낚시하는 행위
4. 낚시터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또는 소각하는 행위

5.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6.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7. 다른 낚시인의 낚시행위를 방해하거나 음주·가무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6조(사고발생의 보고) 낚시인은 낚시터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여수시의회 의결을 얻어 확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2020년도 제2회추경예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계	1,579,635	1,557,616	22,019	1.4%
일반회계	1,363,178	1,347,800	15,378	1.1%
특별회계	216,457	209,816	6,641	3.2%

○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2020년도 제2회추경예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기금	89,891	73,529	16,362	22.3%

2020. 9. 23.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며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재공고

1. 공고기간 : 2020. 9. 23. ~ 2020. 9. 28.(6일간)
2. 인 원 : 2명
3. 자격 및 선정기준
 - 기금운용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
 - 여수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우선 선정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일 조건인 경우 여성 우대
4. 임 기 : 2020. 10. 5. ~ 2022. 10. 4.(2년)
 - ※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5. 심의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결산보고서안
-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6. 선정방법 : 서면 심사 후 적격자 선정

7. 결과통보 : 2020년 9월 중(개별 통보)

8. 제출서류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9. 접수방법 : 직접, 우편, 이메일(cccgirl@korea.kr)

(주소)우편번호 59713, 여수시 여서1로 101, 2층 도시미화과(여서동)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미화과(☎061-659-3846)로 문의 바랍니다.

이 력 서		
(사 진)	성명(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도로명주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 . .		
. . .		
. . .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 . .		
. . .		
. . .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별 사 항	기 관 명
. . .		
. . .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0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행정처분사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여 수 시 장

1. 행정처분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능원기업(주) (이 * 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영업정지 5개월 기간:2020. 9. 21. ~ 2021. 2. 20.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83조제3호,

2. 공고송달기간 : 2020. 9. 23. ~ 2020. 10. 07(15일)

3. 공고 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우리 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청 도시계획과에 방문하여 관련공문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라.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반월·화양 옥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여수시 『선원 반월·화양 옥적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여 수 시 장 (인)

1. 사 업 명 : 2019년도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선원 반월· 화양 옥적지구)
2.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순번	지 구 명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비고
		필지 수	면적(m ²)	필지 수	면적(m ²)	
1	선원 반월지구	252	135,253	178	133,976.6	폐쇄 74
2	화양 옥적지구	1,305	808,296	949	805,224.5	폐쇄 356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20. 9. 23. ~ 2020. 10. 7.(14일간)
6. 공람장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경계점표지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31~2)